

## 위원회

차별 관행 건 접수는 차별 행위가 일어난지 1년 이내로 뉴욕 시 인권위원회 (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)에 접수해야 합니다. 차별 신고 접수는 무료입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**311** 또는 **718-722-3131**로 전화 주십시오.

뉴욕주 법정에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면 차별 행위가 일어난 시점에서 3년 이내로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. 뉴욕주 법정과 인권회 두 군데 같은 사건 접수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.

교육을 요청하거나 인권위원회가 하는 업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**NYC.gov/HumanRights** 를 방문하십시오.

## 고용

**직원, 인턴, 구직자 및 독립 계약자에 대해 다음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**

연령 •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 • 양육자 지위 • 피부색 • 신용 기록 • 장애 • 성별 • 성 정체성 • 이민 상태 • 결혼 여부 또는 동거 상태 • 군 복무 여부 • 출신 국가 • 임신 여부 • 인종 • 종교/신앙 • 임금 내역 • 성적인 문제 및 출산 관련 건강문제의 결정 • 성 지향성 •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 상태 • 실업 상태

## 주거

**세입자, 아파트 임차 신청자 및 주택 구매자에 대해 다음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**

연령 • 피부색 • 장애 • 성별 • 성 정체성 • 이민 상태 • 합법적인 직업 • 합법적 소득 원 (주택 보조금 포함) • 결혼 여부 또는 동거 상태 • 군 복무 여부 • 출신 국가 • 임신 여부 • 자녀 유무 • 인종 • 종교/신앙 • 성 지향성 •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 상태

## 공공 시설

**상점, 식당, 공원, 도서관 또는 택시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다음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**

연령 • 피부색 • 장애 • 성별 • 성 정체성 • 이민 상태 • 결혼 여부 또는 동거 상태 • 군 복무 여부 • 출신 국가 • 임신 여부 • 인종 • 종교/신앙 • 성 지향성

## 차별적 괴롭힘

**다음의 이유로 누군가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헐박하는 행위, 소유물을 손상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**

연령 • 피부색 • 장애 • 성별 • 성 정체성 • 이민 상태 • 결혼 여부 또는 동거 상태 • 출신 국가 • 임신 여부 • 자녀 유무 • 인종 • 종교/신앙 • 성 지향성

## 법 집행 기관에 의한 편견에 기반한 프로파일링

**법 집행 기관이 다음의 이유로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**

연령 • 피부색 • 장애 • 성별 • 성 정체성 • 거주 상태 • 이민 상태 • 출신 국가 • 임신 여부 • 인종 • 종교/신앙 • 성 지향성

## 대출 관행

**대출 관행 또는 조건에 대해 다음의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**

연령 • 피부색 • 장애 • 성별 • 성 정체성 • 이민 상태 • 결혼 여부 또는 동거 상태 • 군 복무 여부 • 출신 국가 • 임신 여부 • 자녀 유무 • 인종 • 종교/신앙 • 성 지향성

## 보복행위

차별 관행에 반대하는 행위, 차별에 불만을 제기하는 행위, 차별에 관한 조사를 지원 하는 행위 또는 차별과 관련된 절차에서 증언한다는 이유로 보복을 가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.